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94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정혜경 · 전종덕 · 허성무
손 술 · 최혁진 · 용혜인
윤종오 · 김재원 · 이주희
한창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매립·소각 등 폐기물 처분 비용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발생 단계에서의 감량과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적인 경제적 유인 기제임. 그러나 그 용도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집중되어,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이 우선순위로 제시한 감량 및 재사용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자원순환 정책의 핵심 재원임에도 2028년 1월 1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일몰 규정으로 설계되어 있어,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안정적·지속적 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에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 사업과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

상을 해당 용도에 계상하도록 하여 부담금을 재투자를 통한 예방적 감량에 우선 투입하도록 하고, 부담금의 효력 기한을 삭제하여 순환이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7조, 제38조 및 제49조 등).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에 제1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기반 구축 사업

3의2.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제38조제3항제1호 중 “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37조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교부받은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37조제1호의2 및 제3호의2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존속기한 및 재검토키한”을 “재검토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생략) <u><신설></u> 2. ~ 3. (생략) <u><신설></u> 4. ~ 7. (생략)	제3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재사용제품의 이용 활성</u> <u>화를 위한 보급·지원 및 기</u> <u>반 구축 사업</u> 2. ~ 3. (현행과 같음) <u>3의2. 다회용기 등 재사용제품</u> <u>의 사용 확대를 위한 시설의</u> <u>설치·운영</u> 4. ~ 7. (현행과 같음)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생략) ③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제3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u> <u>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u> 2. (생략) <u><신설></u>	제38조(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설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제37조제1호, 제1호의2, 제2</u> <u>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u> <u>및 제5호의 규정</u> ----- ---- 2. (현행과 같음) <u>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u> <u>연도마다 교부받은 폐기물처분</u> <u>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5</u>

④ (생략) 제49조(규제의 <u>존속기한</u> 및 <u>재검토기한</u>) ①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2028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생략)	<u>0 이상을 제37조제1호의2 및 제3호의2에 따른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9조(규제의 <u>재검토기한</u>)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